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3. 1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6. 3. 13.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6. 3. 2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재무과장 오은겸)

가.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의 일부개정(2026. 1. 1.시행)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이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조정**(안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5682(2026. 2. 2.)호]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270호

. 예고기간: 2026. 1. 30.～2026. 2. 19.(20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8조) 현행 조례는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 취지와 체계에 부합함.

나.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며, 실무 운영에 맞게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3. 2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